

 <p><b>거창군</b> Geochang County</p> <p>공보는 공문서로서 효력을 갖는다.</p>	<h1 style="font-size: 4em; margin: 0;">공 보</h1> <p style="font-size: 1.5em; margin: 0;">제885호 2022. 11. 9.(수)</p>	
---	---	---

선 결	기관의 장

## 고 시

거창군 고시 제2022-118호 도로명주소 고시 ..... 2

## 공 고

- 거창군 공고 제2022-1506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3
- 거창군 공고 제2022-1507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 9
- 거창군 공고 제2022-1509호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15
- 거창군 공고 제2022-1511호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 29
- 거창군 공고 제2022-1514호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 59
- 거창군 공고 제2022-1516호 2025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 87
- 거창군 공고 제2022-1518호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8

<b>회 램</b>									
------------	--	--	--	--	--	--	--	--	--

발 행 : 거창군 편 집 : 기획예산담당관 (☎055-940-3043)

※ 거창군 공보는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11. 9.

거창군수

○ 도로명주소 고시대상

- 건물번호 부여 : 경상남도 거창군 신원면 신차로 3106 등 7건
- 건물번호 폐지 : 경상남도 거창군 거창읍 성산길 290 등 33건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도로명고시일	도로명 부여 (변경·폐지)사유	비고
(별 도 열 람)				

○ 도로명주소 사용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과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부여·변경·폐지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7조 및 제8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 이름,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고시내용과 기타 사항은 거창군청 민원소통과(☎055-940-3313)로 문의하시거나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거창군 공고 제2022-1506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거창군수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 1. 제정(개정·폐지)이유

- 힐링랜드 시설사용료의 기준과 감경기준을 추가하고,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힐링랜드 방문객의 편의를 증진하고 불편사항을 해소하여 힐링랜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근거 신설(안 제3조의3)
- 주차장 사용료 및 감경기준 신설(안 제5조제3항, 별표 2, 별표 3)
  - 사용료 신설: 경차 또는 1,000cc이하 차량
    - 30분 기준 250원(10분 초과마다 100원 추가)
    - 1일 2,500원
  - 50퍼센트 감경: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
-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의 사용료 추가징수 기준 신설(안 별표 2)
  - 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 추가 가능 인원 1실당 2명
  - 별표 3에 따른 감면을 적용 제외

#### 3. 붙임 개정 조례안

#### 4.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산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거창군청 산림과(힐링랜드운영담당)
- 우편번호:50118 전화: 055-940-7932 팩스: 055-940-7939 이메일: smile0111@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 ① 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②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이 조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b>제5조(입장료 등 감면)</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li> <li>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li> <li>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li> </ol>	<p><b>제3조의3(예약제외 시설물 운영 등)</b></p> <p>① <u>군수는 힐링랜드의 산림경영, 산림문화행사 및 그 밖에 산림행정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약제외 시설물을 운영할 수 있다.</u></p> <p>② <u>군수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에는 통합예약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u></p> <p>② <u>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기준, 관리자 권한 예약의 내부기준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u></p> <p><b>제5조(입장료 등 감면)</b>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장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9조의7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li> <li>2. 「거창군 인구증가 지원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li> <li>3. 「거창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li> <li>4.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li> <li>5. 숲속의 집, 산림휴양관 등 시설사용자</li> <li>6. 그 밖에 군수가 힐링랜드에 공익목적의 행사를 유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li> </ol> <p>②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설사용료 또는 체험료를 면제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하</li> </ol>

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③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는 행사 등, 공익목적: 시설사용료 및 체험료

2. 영 제9조의7제2항제5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산림휴양관 또는 숲속의집 사용자, 공무수행자: 주차장 사용료

③ 주차장,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은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시설사용료를 감경할 수 있다.

[별표 2] 시설사용료(제4조제1항 관련)

시설명	구분	사용기준	사용료		추가 징수 기준
			성수기	비수기	
주차장	경차, 1,000시시 미만	30분	250원 (10분 초과당 100원)		<신 설>
		1일	2,500원		
	승용차, 승차인원 15인승 이하 승합차, 1톤 이하 화물차	30분	500원 (10분 초과당 200원)		별표 3(사용료 감면) 제1호에 신설
		1일	5,000원		
	승차인원 16인승 이상 승합차, 1톤 초과 화물차	30분	1,000원 (10분 초과당 400원)		
		1일	10,000원		
산림 휴양관	36제곱미터 (2명~4명)	1일	100,000원	70,000원	-최대수용 인원 초과 1명당 1만원 -추가 가능한 원 1실당 2명 -별표 3에 따른 감면을 적용 제외
	52제곱미터 (6명~8명)		140,000원	90,000원	
	80제곱미터(10명)		180,000원	150,000원	
숲속의 집	38제곱미터(2명~4명)	1일	100,000원	70,000원	
	52제곱미터(6명~8명)		140,000원	90,000원	
셔틀버스	힐링랜드 시설사용자: 무료				

비고: 1회 주차 시 누적시간으로 산정한 금액이 1일 주차요금을 초과할 경우 1일 주차요금으로 징수한다.

[별표 3] 시설사용료 감경 기준(제5조제3항 관련)

1. 주차장<신 설>

감경대상	감경률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12항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등 표지를 붙인 차량	50퍼센트

2. 산림휴양관 및 숲속의 집

감경대상	감경률	기준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50퍼센트	1. 비수기 주중에 한정함 2. 1가정 1실에 한정함 3. 감면대상자가 직접 예약한 경우에 한정하며, 입실한 그날 관련 증명서 를 제출해야 함
1급~3급인 국가보훈 대상자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30퍼센트	
4급~7급인 국가보훈 대상자		
거창군민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30퍼센트	

비고

1. “국가보훈대상자”란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7제2항제6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부터 제10호의4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거창군민”이란 거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이란 조례 제5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말한다.
4. 감경항목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유리한 하나만 적용한다.



거창군 공고 제2022-1507호

거창군 거창 향노화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주민에게 알려 널리 의견을 구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합니다.

2022년 11월 3일

거창군수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 규칙안 입법예고

#### 1. 개정이유

- 설·추석 연휴 기간에도 힐링랜드를 운영하고 성수기를 국립자연휴양림 운영기준에 맞춰 방문객과 고향방문 출향인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예약제외시설물의 내부기준을 정하여 힐링랜드를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성수기 변경(안 제2조)
  - 현행: 7월·8월
  - 변경: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
- 정기 휴관일 축소(안 제4조)
  - 현행: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
  - 변경: 매주 월요일
- 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기준 신설(안 제7조의2)
  - 예약제외 시설물에 해당하는 경우
  - 관리자 권한 예약 시 내부기준

#### 3. 붙임 개정규칙안

#### 4. 의견제출

- 이 규칙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산림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 소: 거창군 가조면 의상봉길 834 거창군청 산림과 힐링랜드운영담당
- 우편번호:50118 전화: 055-940-7932 팩스: 055-940-7939 이메일: smile0111@korea.kr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입법예고문 추가 게재: 거창군 홈페이지(<http://www.geochang.go.kr>)

##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거창 향노화 힐링랜드 운영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1호 중 “7월·8월”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으로 한다.

제4조제1항제1호 중 “말한다), 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를 “말한다)”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기준)** ① 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
2. 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到來)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3. 힐링랜드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관련기관 협조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산림치유센터 내 세미나실(산림치유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별도의 예약 없이 사용함이 원칙)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통합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이하 “관리자 권한”이라 한다)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경우 권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권한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권한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권한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별지서식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b>제2조(입장시간 등) ① (생략)</b>                      ②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수기: <b>7월·8월</b>, <b>금요일</b>,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p> <p><b>제4조(휴관일) ①</b>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b>말한다</b>), <b>1월 1일, 설날 연휴, 추석 연휴</b>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p> <p>② (생략)</p>	<p><b>제2조(입장시간 등) ① (현행과 같음)</b>                      ② 성수기와 비수기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성수기: <b>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의 기간</b>, <b>금요일</b>,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전날                      2. 비수기: 성수기를 제외한 기간</p> <p><b>제4조(휴관일) ①</b> 조례 제3조에 따른 힐링랜드 휴관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정기 휴관일: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인 경우에는 공휴일 다음의 첫 번째 평일을 <b>말한다</b>)                      2. 임시 휴관일: 군수가 시설의 점검 및 보수 등의 사유로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날</p> <p>② (현행과 같음)</p>
<p>&lt;신 설&gt;</p>	<p><b>제7조의2(예약제외 시설물 운영기준)</b>                      ① <u>조례 제3조의3에 따른 예약제외 시설물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u>                      1. <u>시스템 오류에 따른 예약 사고, 기존에 예약한 객실 등의 사용이 어려운 경우 등을 대비하고자 하는 경우</u>                      2. <u>시설의 보수 및 동절기 도래(到來) 등에 따라 시설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u>                      3. <u>힐링랜드에서 산림사업, 문화행사, 간담회,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홍보, 관련기관 협조 등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u>                      4. <u>산림치유센터 내 세미나실(산림치유</u></p>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별도의 예약 없이 사용함이 원칙)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에는 주중에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군수의 승인을 받아 주말에 운영할 수 있다.

③ 예약제외 시설물의 운영은 별지 서식의 시설사용 대장을 통해 관리하며, 그 내용을 군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 누구나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예약제외 시설물의 사전 예약이 필요한 경우 예약통합시스템의 관리자 권한(이하 “관리자 권한”이라 한다)으로 시설물을 예약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관리자 권한으로 예약할 경우 권한 오남용 및 부당 예약이 발생하지 않도록 군수는 다음 각 호의 내부통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1. 관리자 권한 예약의 사유, 사용자, 예약 및 사용 일자, 시설물의 명칭 등이 포함된 내부승인 절차

2. 관리자 권한 예약 담당자의 지정·해제

3. 자체 관리자 권한 예약 운영실태 점검(반기별 1회)

[별지 서식] 시설사용 대장(제7조의2제4항 관련)

## 시설사용 대장

연번	사용자	사유	내용				비고
			시설명	사용기간	입실시간	퇴실시간	

거창군 공고 제 1509 호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3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시행규칙」
2. 개정 이유 : 청년 정책 위원회 당연직 위원을 추가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청년수당과 지역공동체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3. 주요내용

####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가. 위원회의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을 추가 (안 제10조제3항)

1) 미래전략과장, 농업기술센터소장

나. 위원회 입안 기준에 따라 조문 순서 및 내용 등 정비(안 제10조의 2·제10조의3, 제11조·제12조·제11조의2)

다. 청년수당을 신설함(안 제 16조의2)

라.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신설함(안 제20조2)

####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시행규칙」

가. 청년수당 세부기준 신설함(안 별표)

1) 규모: 청년 수당 1인 200만원

2) 기준

- 가) 공고일 속한 연도 19세 이상 45세 이하 미혼 청년
- 나)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군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
- 다)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내 계속하여 근속자 중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

나. 별지 제2호의 서식 개정

4. 소요예산 : 2022년 203백만원 확보

5. 예고기간 : 2022. 11. 3. ~ 11. 23. (20일간)

#### 6.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인구교육과)
- 전화 : 055-940-8818, 팩스 : 055-940-8709, 이메일: gcssj@korea.kr
- ※ 발송후 확인 연락 바랍니다.

- 붙임 1.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개정 및 시행규칙안 1부.  
 2.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끝.



## 거창군 청년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를 제10조의2부터 제10조의4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기업지원·인구교육·문화관광·복지정책·경제 업무 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이 되도록 한다.

가.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나.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

다.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

라.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제12조(중전 제11조)제1항 중 “개의” 를 “개의(開議)” 로 한다.

제12조를 제11조로 하고 제11조(중전 제12조)제1항 중 “제척” 을 “제척(除斥)”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6조의2 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제5항(중전 제4항) 중 “제3항” 을 “제4항” 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 군수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청년에게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적극적인 군정 참여
2. 소셜미디어 활용한 홍보 활동
3. 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제16조의2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 이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인구교육과장, 문화관광과장, 복지정책과장, 경제교통과장으로 한다.</u></p> <p><u>④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이상으로 구성하고 특정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u></p> <p><u>1. 거창군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p> <p><u>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u></p> <p><u>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u></p> <p><u>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p> <p><u>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⑥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u>⑦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p><u>1. 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u></p>	<p><u>제10조(위원회의 구성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u></p> <p><u>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u></p> <p><u>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 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u></p> <p><u>1. 당연직 위원: 기획·기업지원·인구교육·문화관광·복지정책·경제 업무부서의 장, 농업기술센터소장</u></p> <p><u>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 다만 청년이 위촉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도록 한다.</u></p> <p><u>1.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u></p> <p><u>2. 청년단체 등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청년</u></p> <p><u>3.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또는 관계기관의 장</u></p> <p><u>4.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u></p> <p><u>제11조의2(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업무를 총괄한다.</u></p> <p><u>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u></p> <p><u>제10조의2(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u></p> <p><u>제10조의3(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u></p>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니한 경우</u>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                  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                  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                  될 경우                  5.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b>제11조(위원회 운영)</b> ① 위원회의 회                  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                  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                  의</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④ (생략)</p> <p><b>제12조(위원의 제척 등)</b> ① 해당 안전                  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                  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된다.                  ②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전의                  공정한 자문과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                  운 사정이 있을 때 해당 위원을 해당                  안전의 심의 등에서 배제해야 한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p> <p><b>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b> ① 군수                  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생활 안정을                  위하여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서 지</p>	<p>1. <u>위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                  니한 경우</u>                  2.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남용한 경우                  3. 건강 등 일신상의 이유로 위원 스                  스로가 해촉을 원하는 경우                  4. 품위손상 등의 사유로 위원으로 계                  속 활동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                  정될 경우                  5. 제11조제1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                  하고 회피(回避)하지 않은 경우                  6. 그 밖에 군수가 직무수행에 부적합                  하다고 인정하는 경우</p> <p><b>제12조(위원회 운영)</b> ① 위원회의 회                  의는 연 1회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위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회의소집 요구                  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 소집하며, 회                  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u>개                  의(開議)</u>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으로 의결한다.                  ②~④ (현행과 같음)</p> <p><b>제11조(위원의 제척 등)</b> ① 해당 안전                  에 이해관계가 있는 위원은 해당 안                  건의 심의에 대하여는 제척(除斥)된다.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                  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                  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해당 안전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전의 심의에서 회피해야 한다.</p> <p><b>제16조의2(생활안정 지원사업)</b> ① 군                  수는 청년 부부의 결혼 초기 생활 안정                  을 위하여 결혼축하금을 예산 범위에</p>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디딤돌통장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자금의 대출 이자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lt;신 설&gt;</u></p>	<p>서 지원할 수 있다.</p> <p>② 군수는 청년 노동자의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위하여 매월 일정 금액을 지원하여 일정 기간 후 약정금액을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디딤돌통장을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③ 군수는 청년의 주거 안정을 위하여 전세 자금의 대출 이자를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p> <p>④ <u>군수는 청년의 권익과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청년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u></p> <p>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원의 세부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p> <p><u>제20조의2(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한 청년활동 지원)</u> 군수는 지역공동체 강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한 청년에게 거창사랑상품권 등을 지급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u>적극적인 군정 참여</u></li> <li>2. <u>소셜미디어 활용한 홍보 활동</u></li> <li>3. <u>그 밖에 군수가 청년정책 추진과 지역공동체 강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하는 활동</u></li> </ol>

##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의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사 업 명	세 부 지원 기준
4. 청년 수당	<p>가. 지원기준</p> <p>1) 공고일 속한 연도 19세 이상 45세 이하 미혼 청년일 것</p> <p>2)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군내 계속하여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고 있을 것</p> <p>3) 공고일 기준 1년 이상 군내 계속하여 근속하고 있을 것</p> <p>4) 소득 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30퍼센트 이하일 것</p> <p>나. 지원 방법 및 금액</p> <p>1) 생애 한 번만, 200만원 지원</p>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거창군 청년 디딤돌 통장 가입신청서

접수번호	○ 빈칸에 기입하거나, □에 √표 하세요.
	○ 기재사항의 허위누락착오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니, 아래 칸에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공란이 있을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I. 기본정보

<b>인적 사항</b>	신청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비상 연락처	
	결혼 여부	<input type="checkbox"/> 미혼 <input type="checkbox"/> 기혼		
	거창군 거주기간	<input type="checkbox"/> 6개월 미만 <input type="checkbox"/> 6개월 이상 ~ 1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1년 이상 ~ 3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3년 이상 ~ 5년 미만 <input type="checkbox"/> 5년 이상 ※ 거창군 최종 전입일로부터 공고일까지 기간		
<b>가구 및 소득</b>	가구 특성	<input type="checkbox"/> 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 가구 <input type="checkbox"/> 법정 차상위계층 가구 <input type="checkbox"/> 그 외 일반 가구		
	가구원 수 (신청자 포함)	<input type="checkbox"/> 1인 <input type="checkbox"/> 2인 <input type="checkbox"/> 3인 <input type="checkbox"/> 4인 <input type="checkbox"/> 5인 <input type="checkbox"/> 6인 이상 (가구원 수 :    ) ※ 건강보험자격확인(통보)서 기준 (기혼자는 배우자 건강보험자격확인서 확인후 추가)		
	건강보험 납부액			
<b>근로 사항</b>	근로유형	<input type="checkbox"/> 임금 노동자(상용직, 임시직) <input type="checkbox"/> 일용직 <input type="checkbox"/> 사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농어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축산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임업소득자 <input type="checkbox"/> 기타(    ) ※ (공고일 기준 최근 180일)		
	근무처 (사업장)명		근무처 연락처	
	근무처 주소			

### III. 적립금 마련 사용계획 등

신청동기	거창군 디딤돌 통장사업에 신청하게 된 동기에 대해 작성해주세요.
------	-------------------------------------





## 관련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범위)** ①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가.~카.

2. 주민의 복지증진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나. 사회복지시설의 설치·운영 및 관리

다. 생활이 어려운 사람의 보호 및 지원

라. 노인·아동·장애인·청소년 및 여성의 보호와 복지증진

마.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설립·운영

바. 감염병과 그 밖의 질병의 예방과 방역

사. 묘지·화장장(火葬場) 및 봉안당의 운영·관리

아. 공중접객업소의 위생을 개선하기 위한 지도

자. 청소, 생활폐기물의 수거 및 처리

차. 지방공기업의 설치 및 운영

3.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 진흥

가.~하.

4. 지역개발과 자연환경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

가.~더. 지역경제의 육성 및 지원

5.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

가.~마. 지방문화·예술단체의 육성

6.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

가.나. (생략)

7. 국제교류 및 협력

가.나. (생략)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은 그 법령의 하위 법령에서 그 위임의 내용과 범위를 제한하거나 직접 규정할 수 없다.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지방재정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

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와 공공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에만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기부·보조, 그 밖의 공금 지출을 할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른 지출은 해당 사업에의 지출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14. 5. 28.>

1.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2. 국고 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보조금을 지출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공공기관”이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 5. 28.>

1.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정하여진 기관
2.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③ 삭제 <2013. 7. 16.>

#### □ 「청년기본법」

[시행 2020. 8. 5.] [법률 제16956호, 2020. 2. 4. 제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발전에 필요한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14조(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 ①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둔다.

②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해당 지역의 청년을 대표하는 사람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지방청년정책조정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21조(청년 복지증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육체적·정신적 건강 증진과 삶의 질 개선 등 복지 증진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2조(청년 금융생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청년의 경제적 자립과 안정적인 금융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외하고는 다른 공과금이나 그 밖의 채권에 우선한다.

#### □ 「공직선거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7893호, 2021. 1. 12., 타법개정]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① 이 법에서 “기부행위”라 함은 당해 선거구안에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 및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 또는 당해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한다.

- 1.~3. (생략)
4. 직무상의 행위

가.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지방자치단체가 표창·포상을 하는 경우 부상의 수여를 제외한다. 이하 나목에서 같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의한 금품제공행위

다. 구호사업 또는 자선사업을 행하는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당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명의를 나타내어 행하는 구호행위·자선행위

□ 「양성평등기본법」

제22조(공직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공직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붙임 2]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례명 : 「거창군 청년 기본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입법예고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  
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례」
- 나.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안 이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변경하고 자료대출 등 수시로  
변경가능하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열람 및 이용시간, 도서관 외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 규칙으로 위임  
(안 제4조·제6조)
  - 2) 수수료 폐지(안 제12조·별표)
  - 3) 도서관운영위원회 임기 변경 및 정비(안 제16조~제19조)
    - (가) 임기변경: 1년⇒2년
    - (나) 신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 나.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함(안 제1조의2 · 제5조의2)

(가) 운영시간

(나) 자료대출

2) 용어순화 등 정비함(안 제2조 · 제3조, 제5조~제13조)

4 예고기간: 2022. 11. 4.~11. 23.

#### 5. 의견제출

○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인구교육과)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 · 반 여부와 그 사유)

- 제출자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그 밖에 참고사항 등

○ 주소: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교촌길 100-30 (인구교육과)

○ 전화: 055-940-8473, 팩스: 055-940-8709, 이메일: yn1052@korea.kr

붙임 1.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서 1부.

2. 일부개정 조례안 및 규칙안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자치법규명: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명(단체명):

○ 주 소:

○ 생 년 월 일:

○ 전 화 번 호:

조례안(규칙안) 내용	의 견	비 고

[붙임2]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2022-
----------	-------

제출일자	2022. 11. .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1. 제안이유**

도서관운영위원회의 임기를 변경하고 자료대출 등 수시로 변경가능하  
거나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위임하는 등 현행 조례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공공도서관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여 거창군  
문화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위임조례와 자치조례를 함께 규정함을 명확히 함(안 제1조)
- 나. 열람 및 이용시간, 도서관 외 자료대출에 관한 사항 규칙으로 위임  
(안 제4조·제6조)
- 다. 수수료 폐지(안 제12조·별표)
- 라. 도서관운영위원회 임기 변경 및 정비(안 제16조~제19조)
  - 1) 임기변경: 1년⇒2년
  - 2) 신설: 위원의 해촉, 제척·기피·회피
- 마. 그 밖에 용어순화 등(안 제7조·제10조·제15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도서관법」 제34조·제48조
-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를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다.

제4조제2항제1호·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본문 중 “다음 각 호와 같다.”를 “규칙으로 정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자료대출)**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7조 조 제목 및 본문 중 “망실”을 “분실”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부속시설”을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로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시설”을 “부속시설”로 한다.

제12조 조 제목 “(사용료 및 수수료)”를 “(사용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을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제14조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본문으로 하면 조 제목 및 본문 (기존 제1항) 중 “사용자”를 “이용자”로 한다.

제15조 중 “전염병환자”를 “감염병환자”로 한다.

제16조제1항 중 “도서관위원회”를 “거창군 도서관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한다.

제17조·제19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않는 경우
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

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원이 임기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연임을 포함한다)되는 사람부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b>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27조 및 제28조에 따라 자료의 수집·보존·열람·대출 및 부속시설을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고, 지역문화예술 진흥과 평생교육에 이바지하기 위한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도서관자료"(이하 "자료"라 한다)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li> <li>2. "열람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내에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li> <li>3. "관외대출자료"란 이용자가 도서관 밖으로 대출할 수 있는 자료를 말한다.</li> <li>4. "부속시설"이란 도서관 내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을 말한다.</li> <li>5. "사용료"란 부속시설물을 사용하고 자 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li> <li>6. "수수료"란 도서관 내에 비치된 자료·정보의 복사 및 인쇄를 하기 위하여 시설 또는 장비를 사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li> </ol> <p><b>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b>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p> <p>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p>	<p><b>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b></p> <p><b>제1조(목적)</b> 이 조례는 「도서관법」 제34조에서 조례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b>제3조(정의)</b>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도서관법」 제2조에 따른다.</p> <p><b>제4조(열람 및 이용시간)</b> ① 도서관의 입관료 및 자료의 열람·대출은 무료로 한다.</p> <p>② 도서관의 열람 및 이용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p>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1. 자료실 : 09:00 ~ 18:00(다만, 토·일요일은 09:00 ~ 17:00)
2. 자유열람실 : 09:00 ~ 22:00(다만, 휴관일은 09:00 ~ 18:00)

제6조(자료대출)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자료를 관외로 대출할 수 있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 이면서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연속간행물 및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비디오테이프, 콤팩트디스크, 카세트, 영상물 등 비도서자료
6.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7조(자료의 망실·훼손에 대한 책임) 대출 열람인이 자료를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도서관법 제48조에 따라 “이용자”로 용어변경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

인정할 때에는 이를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삭 제>

제6조(자료대출) 군수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도서관 외로 대출할 수 있다.

제7조(자료의 분실·훼손에 대한 책임) 대출 열람인이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에는 변상하여야 한다.

제10조(사용허가) ① 다목적실과 시청각실(이하 “부속시설”이라 한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이용자”라 한다)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부속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없다.

1.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속을 해할 우

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사용료 및 수수료)** ① 시설 사용 및 도서관 자료복사·자료출력의 경우 별표와 같이 사용료 및 수수료를 부과 징수한다.

② 사용자가 사용시간 중 그 부속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사용료의 일부 또는 전부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④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 책임)** ① 사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사용자가 제1항의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시설, 설비를 훼손 하였을 때에는 그 손해를 변상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이나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5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전염병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  
2. 시설의 관리상 지장이 있다고 판단될 때

**제12조(사용료)** ① 제10조제1항에 따라 부속시설을 사용할 경우 별표와 같이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이용자가 사용시간 중 그 부속시설의 일부만 사용한 경우에도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 사용료를 계산한다.

③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사에 대하여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공공 또는 공익상의 행사로서 군수가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삭 제>

**제14조(이용자 책임)** 이용자는 사용기간 중 도서관의 시설, 설비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삭 제>

**제15조(입관의 제한)** 군수는 감염병환자, 음주자, 그 밖에 도서관 내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 대하여 입관을 거절하거나 퇴관을 명할 수 있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다만, 위원회 구성 시 특정 성의 위원 수가 60퍼센트를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구교육과장
2.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은 도서관 운영 예산에 반영되어야 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실비변상)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 <신 설>

제16조(도서관운영위원회) ① 「도서관법」 제30조에 따라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각종 문화시설과의 긴밀한 협조를 위하여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위원 10명 이상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단서 삭제>

② 위원은 다음 각 호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인구교육과장
2. 교육계 및 문화계 전문인사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삭 제>

③ 위원회의 회의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7조(위원의 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6.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7.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8.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9. 제1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하지 않는 경우

10.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除斥)된다.

3.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 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4.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② 위원회 심의의 이해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해야 한다.



[별표]

1. 도서관 부속시설 사용료

구 분	기 준	사용료	비 고
시청각실	1회 3시간	50,000원	· 냉·난방시설 사용료(별도) - 1회(3시간기준) 20,000원, 초과시 시간당 5,000원 가산
다목적실	“	30,000원	· 냉난방시설 사용료(별도) - 1회(3시간기준) 15,000원, 초과시 시간당 4,000원 가산

※ 사용료는 기준시간을 적용하며, 초과 시 시청각실은 매1시간당(1시간 미만도 1시간으로 계산) 10,000원, 다목적실은 5,000원을 가산한다.

※ 토·일요일 및 공휴일은 평일 사용료의 20%를 가산한다.

2. ~~프린터 및 자료복사 수수료<삭 제>~~

구 분	규 격	기 준	금액 (원)	비 고
복 사 기	A4	1매(단면)	40(단면)	
	B4	1매(단면)	50(단면)	
컴퓨터 프린터기	A4	1매(단면)	50(단면)	

# 관계법령

## □ 「도서관법」

[시행 2022. 12. 8.] [법률 제18547호, 2021. 12. 7., 전부개정]

**제1조(목적)** 이 법은 도서관 지식정보에 관한 국민의 알 권리 보장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등을 정하고 도서관의 운영과 서비스, 사회적 역할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가 및 사회의 문화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도서관”이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함으로써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는 시설을 말한다.
2. “도서관자료”란 인쇄자료, 필사자료, 시청각자료, 마이크로형태자료, 전자자료, 그 밖에 장애인을 위한 특수자료 등 지식정보자원 전달을 목적으로 정보가 축적된 모든 자료(온라인 자료를 포함한다)로서 도서관이 수집·정리·보존하는 자료를 말한다.
3. “도서관서비스”란 도서관이 도서관자료와 시설을 활용하여 공중에게 제공하거나 지원하는 대출·열람·참고서비스, 각종 시설과 정보기기의 이용서비스, 자료입수 및 정보해득력 강화를 위한 이용지도교육, 독서활동 지원 등 일체의 유·무형 서비스를 말한다.
4. “사서”란 제43조제2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도서관 또는 제9조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근무하는 사람을 말한다.
5. “납본”이란 도서관자료를 발행하거나 제작한 자가 일정 부수를 법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는 것을 말한다.
6. “온라인 자료”란 정보통신망(「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통하여 공중송신(「저작권법」 제2조제7호의 공중송신을 말한다. 이하 같다)되는 자료를 말한다.
7. “온라인 자료 제공자”란 온라인 자료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중송신하는 자를 말한다.
8. “기술적 보호조치”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권 등의 권리에 대한 침해행위를 효과적으로 방지 또는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얻은 자가 적용하는 기술적 조치를 말한다.

**제4조(도서관의 구분)** ① 도서관은 그 설립·운영 주체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립 도서관: 국가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2. 공립 도서관: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3. 사립 도서관: 「민법」, 「상법」,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설립·운영하는 도서관

② 도서관은 그 설립목적 및 대상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공공도서관: 공중의 정보이용·독서활동·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을 말하며, 다음 각 목의 시설을 포함한다.

가.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기반으로 지역사회의 생활 친화적 도서관문화의 향상

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작은도서관

나. 어린이, 장애인, 노인, 다문화가족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2. 대학도서관: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대학교육과정 이상의 교육기관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3. 학교도서관: 「초·중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에서 교원과 학생 및 직원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4. 전문도서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소속 직원, 공중에게 특정 분야의 전문적인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도서관

5. 특수도서관: 특수한 환경에 처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목의 도서관을 말한다.

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사람이나 그 보호자 등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원도서관

나. 육군·해군·공군 등 각급 부대의 장병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병영도서관

다. 교도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소 등에 수용된 사람에게 도서관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교정시설도서관

**제5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지식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여 자유롭고 평등하게 지식정보에 접근·이용할 수 있도록 도서관 발전을 지원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식정보 및 창조기반의 역할수행을 위하여 사서 등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7조(도서관의 책무)** ① 도서관은 국민에게 필요한 도서관자료를 수집·정리·보존·제공하고 정보이용·교양습득·학습활동·조사연구·평생학습·독서문화진흥 등에 기여하여야 한다.

② 도서관은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서비스를 제공받는 데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도서관은 지식정보 취약계층의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도서관자료의 확충, 제공 및 공동 활용체제 구축

2. 평생학습 및 문화 프로그램의 확충·제공

3. 편의시설 확충, 이용편의 제공 및 전문인력 배치

4. 다른 도서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5. 그 밖에 지식정보 접근권 보장 및 지식정보격차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10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도서관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9조(공공도서관의 설치 등)**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할 때 생활환

경이 열악하고 재정 여력이 부족한 시·군·구(자치구인 구를 말한다)에 우선적으로 설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설립된 국·공립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공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하는 경우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도서관 운영의 효율성 및 편의성을 도모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사립 공공도서관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제32조(공공도서관의 업무)** 공공도서관은 공중의 정보이용, 문화활동, 평생학습 등의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중을 위한 도서관자료의 수집·정리·보존 및 제공
2. 공중의 문화활동 및 평생학습에 필요한 프로그램의 제공 및 장려
3. 독서의 생활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실시
4. 다른 도서관과의 긴밀한 협력 및 도서관자료의 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도서관자료를 서로의 이용자에게 빌려주는 것을 말한다)
5. 지역 특성에 따른 분관 등의 설립 및 운영
6. 그 밖에 공공도서관으로서 기능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업무

**제34조(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 및 도서관운영위원회 등)** ① 공립 공공도서관의 관장은 사서직으로 임명한다.

② 공립 공공도서관은 해당 도서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 각종 문화시설과 긴밀하게 협조하기 위하여 도서관운영위원회를 두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도서관운영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48조(이용료)** ① 공공도서관은 그 이용자에게 이용료 등을 받을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도서관법 시행령」

**제35조(공공도서관의 이용료 등)** 법 제48조에 따라 공공도서관이 이용자로부터 받을 수 있는 이용료 등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서관자료 복제 및 데이터베이스 이용 수수료
2. 개인연구실·회의실 등 사용료
3. 회원증 발급 수수료
4. 강습·교육 수수료
5. 도서관 입장료(사립 공공도서관의 경우에 한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47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조례의 제정·개정 및 폐지
2. 예산의 심의·확정
3. 결산의 승인
4. 법령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사용료·수수료·분담금·지방세 또는 가입금의 부

과와 징수

5. 기금의 설치·운용
  6.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재산의 취득·처분
  7.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시설의 설치·처분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9. 청원의 수리와 처리
  10.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
  11. 그 밖에 법령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각 호의 사항 외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야 할 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42조(예산의 편성 및 의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는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도의회는 제1항의 예산안을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0일 전까지 의결하여야 한다.

③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 각 항의 금액을 증가시키거나 새로운 비용항목을 설치할 수 없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예산안을 제출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다시 제출할 수 있다.

#### □ 「양성평등기본법」

[시행 2021. 10. 21.] [법률 제18099호, 2021. 4. 20., 일부개정]

**제21조(정책결정과정 참여)**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책결정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하게 참여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행정기관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성할 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5. 19.>

1. 국가 및 시·도가 구성하는 위원회: 실무위원회
2. 시·군·구가 구성하는 위원회: 시·도위원회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여성가족부장관은 위원회의 성별 참여현황을 공표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직위에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용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기관의 연도별 임용목표비율을 포함한 중장기 계획(이하 이 조에서 “관리직 목표제”라 한다)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

1. 직종·직급·고용형태별 남녀 직원 현황
2. 관리직 남녀 비율 현황
3. 남녀 직원 근속연수 현황

4. 승진 대상자 중 남녀의 승진 비율

5. 남녀 관리직에 대한 연도별 임용 목표 및 달성 시기

⑤ 공공기관의 장은 관리직 목표제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해당 기관의 임원 임명 시 여성과 남성이 균형있게 임명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 2022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p222

위원 중 특정 성별의 비율을 정할 때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 제2항)에 따라 조례에도 적용되므로 조례에 재기재하지 않도록 한다

질의제목 : 강원도 속초시 -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관련문서 : 속초시 속초시정보스포츠센터-3048 (2016. 7. 8.)  
의견16-0183

### 1. 질의요지

조례 제명에 반드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 2. 의견

조례의 적용 범위를 제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될 우려가 있으며,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 있는 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 3. 이유

조례의 제명은 그 조례의 고유한 이름이므로 그 규율 내용을 가장 잘 나타내는 함축적인 내용으로 간결하게 표현해야 하고, 규율 내용 전체에 대한 대표성이 있어야 하며, 그 조례의 내용이 무엇에 관한 것인가를 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자치법규 입안 매뉴얼 p.241 참고), 조례 제명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와 관련하여 이를 강제하는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

하지만, 전국적으로 적용되는 법령과 달리 조례는 그 적용 범위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으로 제한되는바, 그 적용 범위를 제명을 통해 파악이 가능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제정한 동일한 제명의 조례와 혼동될 우려가 있는 점, 입법 형식적인 측면에서도 일관성 있는 입법 형식을 통해 입법의 통일성을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조례의 제명에 포함시키는 경우에 조례의 제명 및 그 조례의 조문에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이 중복 기재됨에 따라 입법 경제적으로 비효율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지만, 이러한 문제점은 약칭 등의 방법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100선

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점포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은 시장(市長)이 따로 정한다.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393조를 준용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서는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점포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배상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

II. 개선방안

○ 공설시장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안 번호	2022-
----------	-------

제출일자	2022. 11. .
제 출 자	인구교육과장

## 1. 제안이유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에 따라 규칙으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하고 알기 쉬운 용어로 순화하는 등 규칙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을 신설함(안 제1조의2·제5조의2)

- 1) 운영시간
- 2) 자료대출

나. 용어순화 등 정비함(안 제2조·제3조, 제5조~제13조)

- 1) 절취한 ⇒ 훔친, 일로부터 ⇒ 일부터, 동일 ⇒ 같은
- 2) 구비하여 ⇒ 갖춰, 한함 ⇒ 한정함, 회무 ⇒ 업무

다. 위원회 규정 정비함(안 제15조·제19조)

- 1) 삭제: 위원의 임기 및 해촉 ⇒ 조 례로 이동 규정
- 2) 신설: 운영세칙

##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9조

나. 예산조치: 해당사항 없음

다. 합 의: 기획예산담당관 법리 검토

라. 기타사항

- 1) 규제심사: 해당사항 없음
- 2) 입법예고
  - 가) 예고기간:
  - 나) 예고결과:
- 3) 비용추계서: 해당사항 없음
- 4) 성별영향평가:



##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을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으로 한다.

제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2(운영시간)** 「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자료실: 9시부터 18시까지
2. 자유열람실 및 북카페: 9시부터 22시까지(다만 휴관일은 9시부터 18시까지)

제2조제1항 중 “군수”를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대출”을 “도서관 외 대출(이하 “대출”이라 한다)”로 한다.

제3조제1항 중 “군”을 “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로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구비하여”를 “갖춰”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 제1호서식)”으로 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절취한”을 “훔친”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대출일로부터”를 “대출일부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를 “조례”로 “위원회”를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로 한다.

제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2(자료대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 이면서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4. 책이음회원 가입자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각종 신문자료

4. 한정판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제1항 중 “동일한”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한하여”를 “한정하여”로 “일로부터”를 “일부터”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별지 제3호서식]”을 “(별지 제3호서식)”으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7조에 따른”으로 “동일”을 “같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4호서식)”으로 한다.

제9조제3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7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하면 같은 조 제3항 중 “동일하게”를 “같이”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한함”을 “한정함”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8호서식)”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 중 “제12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12조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에 의한”을 “제1항에 따른”으로 “[별지 제9호서식]”을 “(별지 제9호서식)”으로 한다.

제13조제1항제2호 중 “때”를 “경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10호서식]”을 “(별지 제10호서식)”으로 “첨부하여”를 “붙여”로 하며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제14조를 삭제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회무”를 “업무”로 “위원장”을 “조례 제16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사고가 있을”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을 삭제한다.

##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p><u>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u></p> <p style="text-align: right;"><u>&lt;신 설&gt;</u></p> <p><b>제2조(도서관의 이용제한)</b> ① <u>군수</u>는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u>대출</u> 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 행위</p> <p>2.~6. (생략)</p> <p>③ (생략)</p> <p><b>제3조(회원가입)</b>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초등학생 이상) 또는 <u>군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회원 가입시 부모(보호자)동의서 [<u>별지 제2호서식</u>] 를 제출하여야 한다.</p>	<p><u>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u></p> <p><b>제1조의2(운영시간)</b> 「<u>거창군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u>」(이하 “<u>조례</u>”라 한다) 제4조제2항에 따른 도서관 운영시간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자료실: 9시부터 18시까지</p> <p>2. 자유열람실 및 북카페: 9시부터 22시까지(다만 휴관일은 9시부터 18시까지)</p> <p><b>제2조(도서관의 이용제한)</b> ① <u>거창군수</u>(이하 “<u>군수</u>”라 한다)는 도서관의 운영상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p> <p>②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p> <p>1. <u>도서관 외 대출</u>(이하 “<u>대출</u>”이라 한다) 받지 않은 자료의 관외 유출행위</p> <p>2.~6.(현행과 같음)</p> <p>③ (현행과 같음)</p> <p><b>제3조(회원가입)</b> ① 도서관 회원(이하 "회원"이라 한다)에 가입할 수 있는 자격은 경상남도에 주소를 둔 도민(초등학생 이상) 또는 <u>거창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재 학교에 재학 중이거나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으로 하되, 군수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u> 다만, 초등학생의 경우는 회원 가입시 부모(보호자)동의서(<u>별지 제2호서식</u>)를 제출하여야 한다.</p>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 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2.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절취한 사람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한 사람
4.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5. 최종 자료 대출일로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회원자격 상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거창군립한마음도서관 설치 및 운영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6조에 따른 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 <신 설>

② 회원에 가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춰 회원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1. 회원 가입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여권, 공무원증)

**제5조(회원자격의 상실)**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회원자격을 상실한다.

1. 다른 시·도로 거주지를 이전한 사람
2. 대출 자료를 고의적으로 훼손시키거나 훔친 사람
3. 자료를 허락 없이 자료실 밖으로 반출시키려한 사람
4. 도서를 반납하지 않은 기간이 180일 이상인 사람
5. 최종 자료 대출일부터 2년 이상 대출이 없는 사람
6. 그 밖에 군수가 회원관리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② 회원 자격이 상실된 사람 중에서 군수가 도서관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원자격을 회복할 수 있다.

③ 회원자격 상실이 부당하다고 생각될 때는 조례 제16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에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제5조의2(자료대출)** ① 조례 제6조에 따라 도서관자료를 대출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경상남도에 주소를 두고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2. 군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군 소재 직장에 재직 중 이면서 도서관회원으로 등록된 사람
3. 공무수행 등 공적인 연구목적으로 해당 기관장이 발급한 신분증 소지자
4. 책이음회원 가입자

**제6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동일한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연기신청은 1회에 한하며 연기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자료의 반납)**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때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③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요청서 [별지 제3호서식] 발송과 함께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변상)** ①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료의 변상은 1개월 이내에 동일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동일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변상을 받을 경우 변상 도서대장 [별지 제4호서식] 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제제)** ① 자료를 분실한 사람이 기일 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할 때까지 도서관의 이용을 금지할

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출을 금지할 수 있다.

1. 희귀 자료 및 고서 등 귀중본 자료
2. 참고자료 및 행정자료, 논문집
3. 각종 신문자료
4. 한정관으로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자료
5. 그 밖에 군수가 대출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제6조(대출)** ① 자료의 대출은 무료로 하고, 대출기한은 14일 이내로 하되, 1회에 대출하는 자료는 5권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같은 자료가 여러 권으로 분철된 것은 예외로 할 수 있다.  
② 대출기간 연기신청은 1회에 한정하며 연기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로 한다.

**제7조(자료의 반납)** ① 제6조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도서관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이를 반납토록 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일이 도서관 휴관일인 경우에는 다음 개관일로 한다.  
③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대출자료 반납요청서(별지 제3호서식)발송과 함 자료의 반납을 요구할 수 있다.

**제8조(자료의 변상)** ①조례 제7조에 따른 자료의 변상은 1개월 이내에 같은 자료로 변상하게 하고, 같은 자료로 변상이 불가능할 때에는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변상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자료의 변상을 받을 경우 변상 도서대장(별지 제4호서식)을 비치·관리 하여야 한다.

**제9조(제제)** ① 자료를 분실한 사람이 기일 내 변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변상할 때까지 도서관의 이용을 금지할

수 있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정지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군수는 회원증 재발급대장 [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7일 이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자료기증서 [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 [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입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도서 및 자료와 동일하게 취급한다.

**제11조(사용신청)** ① 도서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1회에 한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 [별지 제8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신 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수 있다.

② 대출 자료의 반납기간이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동안 대출을 정지한다.

③ 회원증을 분실하여 재발급을 신청하면, 군수는 회원증 재발급대장(별지 제5호서식)에 기재하고 7일 이후 회원증을 발급한다.

**제10조(도서 및 자료의 기증)** ① 조례 제9조에 따라 도서관에 도서 및 자료를 기증하고자 하는 자는 도서 및 자료기증서(별지 제6호서식)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기증 자료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기증도서 및 자료부(별지 제7호서식)를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기증 등의 방법으로 수입된 도서 및 자료는 도서관 도서 및 자료와 같게 취급한다.

**제11조(사용신청)** ① 도서관내 부속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개시 5일 전까지, 허가사항을 변경(1회에 한정함)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개시 2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 신청서 1부.(별지 제8호서식)
2. 사용계획서 1부.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1부.

② 사용자는 사용료를 사용개시 2일전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12조(사용료 감면)** ① 조례 제12조에 따른 사용료 감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전액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관·주최하는 행사
2. 50퍼센트 감면: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 [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1.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때: 사용료의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부속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 [별지 제10호서식]에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4조(사용자 변상)**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변상은 1개월 이내에 사용자가 그 시설물을 원상회복하거나 그 손해액의 시가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조례 제16조에 따른 위원회 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 감면을 받고자 하는 자는 부속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별지 제9호서식)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13조(사용료의 반환)** ① 이미 납부한 사용료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반환한다.

1. 도서관의 사정으로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경우: 사용료의 전액
2. 천재지변 등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
3.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사용예정일 전일까지 사용하지 아니할 것을 신고한 경우: 사용료의 전액

② 제1항에 따른 사유로 사용료를 환불받고자 할 때에는 부속시설사용료 반환신청서(별지 제10호서식)에 부속시설 사용(변경)허가서, 사용료 납부영수증을 붙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삭 제>

**제16조(위원장 등의 직무)** ① 조례 제16조에 따른 거창군 도서관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위원회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



의 의결을 얻어 해촉할 수 있다.

1. 사임의 의사가 있을 때

2. 정당한 사유 없이 위원회에 3회 이상 불참한 때

3. 위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한 때

4. 도서관 운영에 불이익한 결과를 초래하였을 때

원장이 정한다.

## 관계법령

### □ 「지방자치법」

[시행 2022. 1. 13.] [법률 제18661호, 2021. 12. 28., 타법개정]

제29조(규칙)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 □ 2022 법제처 자치법규 입안길라잡이

#### 5. 별표나 별지 서식의 사용 방법

별표 또는 별지 서식의 제목에서는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은 []를 붙여 표시하고, 자치법규의 조문에서 이를 인용할 때에는 “[ ]”를 쓰지않고 “별표”, “별지 서식”과 같이 인용한다.

### □ 법제처 조례규제개선 100선

#### 4. 지자체장에 의한 자의적인 손해배상금 결정 방지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제0조(손해배상책임) ①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점포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배상금은 시장(市長)이 따로 정한다.

#### I. 문제점 (유형 : 상위법령 위반)

○ 「민법」 제750조에서는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763조에서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은 제393조를 준용하여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에서는 사용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점포 또는 기타시설물을 훼손하거나 파괴한 때에는 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되 이 경우 배상금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고 규정하여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 「민법」에 대한 특례를 조례로 규정

#### II. 개선방안

○ 공설시장 사용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을 시장이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공설시장 설치 및 사용 조례」 개정

#### ○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 개정안 입법예고

「거창군 주민투표조례」을 개정함에 있어 그 이유와 주요 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4일  
거창군수

###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 2. 개정이유

- 가.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전자청구서명제도 도입
- 나. 주민투표청구심의회 등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반영

### 3. 주요내용

- 가. 외국인 주민투표권 기준 연령은 법에서 규정하고 있어 조례에 명시된 연령 기준 삭제하고 법 조문 준용(안 제3조)
- 나. 조례에 위임하였던 주민투표의 대상을 법에서 규정하여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 삭제)
- 다. 전자청구서명제도 도입에 따른 조문 반영(안 제8조제1항, 제10조)
- 라. 법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를 신설하여 중복 규정된 관련 조항 삭제(안 제13조 삭제)
- 마. 법에서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위원 수를 직접 규정하고 있어 관련 조항 삭제, 위원 자격 정비 (안 제14조)

4. 개정조례안 : 붙임

5. 예고기간 : 2022. 11. 4. ~ 11. 23.

#### 6. 의견제출

가. 제출기한 : 2022. 11. 23.(수) 18:00까지

나. 제출방법 : 방문, 우편, 팩스 등

다.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라. 의견제출하는 곳 : 거창군청 행정과

- 1)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2층 행정과
- 2) 전화 055)940-3182, 팩스 055)940-3169, 이메일 flyhak80@korea.kr

#### 7. 기 타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청 행정과 주민자치담당[☎(055)940-318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의견제출서 1부.  
2.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개정안 1부.  
3. 관계법령 1부. 끝.

[붙임 1]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조 례 명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건	비 고

[붙임 2]

거창군 조례 제 호

##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군의 책무)**의 “재외국민 또는 외국인” 을 “외국인” 으로 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외국인은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를 삭제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 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동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 제명을 “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로 변경하고 조문 중 “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을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로 한다.

제10조 중 “청구인서명부”를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로 한다.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를 삭제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당 주사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18조(수당 등)를 삭제한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제3항과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제21조(공표방법 등) 중 “법 제26조제1항” 을 “법 제26조제1항 · 제4항 · 제5항” 으로 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제1항 단서(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 제10조제1항(전자청구인서명부에 관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2023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조(군의 책무) ①~③ (생략)</p> <p>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재외국민 또는 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2조(군의 책무) ①~③ (현행과 같음)</p> <p>④ 군수는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투표권을 부여받은 <u>외국인</u>이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외국어와 한국어를 함께 표기하여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u>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u>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 자격을 갖춘 <u>사람</u>은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군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u>외국인</u>은 주민투표권이 있다.</p>
<p>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읍·면의 명칭 및 구역변경, 폐치·분합, 사무소변경에 관한 사항</p> <p>2. 「지방자치법」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행정리의 구역변경과 폐치·분합</p> <p>3.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p> <p>4. 각종 기금의 설치, 지방채 발행, 민간투자사업의 실시에 관한 사항</p> <p>5. 법 제7조제2항제5호에서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 그 밖의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p> <p>6. 그 밖에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사항</p>	<p>&lt;삭 제&gt;</p>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생년월일·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 <후단 신설>

**제9조(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법 제12조**

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생년월일,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② 청구인서명부는 읍·면별로 분리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제9조(주민투표청구서의 제출) 법 제**

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에는 청구인대표자의 성명, 생년월일, 주소 또는 체류지,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 자료를 덧붙여 제출할 수 있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군수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읍·면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④ (생략)

제13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군수는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주민투표와 관련한 이의신청의 심사·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결정
4. 그 밖에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4조(심의회 구성) ① 심의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의 과반수는 군 의원과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② 심의회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군의 5급 이상 공무원
2. 군 의원
3. 변호사,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응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④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②~④ (현행과 같음)

<삭 제>

제14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삭 제>

<삭 제>

① 법 제12조의2제3항의 규정에 의한 거창군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군 소속 관계 공무원
2. 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군수가 위촉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② 심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주민투표업무 담

담당주사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③ (생략)

**제18조(수당 등)** 심의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과 이해관계인 및 참고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거창군 위원회 실비변상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② (생략)

③ 법 제10조제3항 및 이 조례 제6조 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생략)

⑤ 법 제9조제2항 및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생략)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당주사로 한다.

**제15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③ (현행과 같음)

**<삭 제>**

**제20조(주민투표청구서 등의 서식)**

①~② (현행과 같음)

③ 제6조제1항에 따른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와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은 각각 별지 제3호서식 및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④ (현행과 같음)

⑤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⑥ (현행과 같음)

**제21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제4항·제5항에 따른 공고는 관보·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서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주민투표실시구역 변경	[ ]신청    [ ]필요없음			
	<변경 사유>			
「주민투표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 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청구인대표자			년    월    일	(서명 또는 날인)
거창군수 귀하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li>4.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li> <li>5. 주민투표실시구역변경란에는 관할구역 중 특정지역 일부에서만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예외적인 경우 신청하며,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 이해관계가 있는 사유를 작성</li> </ol>				

【별지 제2호서식】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주민투표 청구요지			
서명요청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제외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제외지역 :		
<p style="text-align: center;">위 사람은 「주민투표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인대표자로서 위와 같이 주민투표청구권자의 서명을 요청할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거창군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ol>			

**【별지 제3호서식】**

서명요청권 위임신고서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을 위임하였음을 신고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text-align: center;">귀하</p>				
<p>※ 작성요령</p> <p>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p>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p> <p style="color: red;">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p>				

**【별지 제4호서식】**

<b>서명요청권 위임신고증</b>				
주민투표 청구요지				
청구인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수임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p>「주민투표법」 제10조제3항과 「거창군 주민투표조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청구인 대표자의 서명요청권의 위임사실을 신고하였으며, 수임인은 서명요청권이 있음을 증명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                        년          월          일</p> <p style="text-align: center;">                        거창군수                        (인)</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주민투표청구요지란에는 주민투표청구의 대상과 취지 및 이유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li> <li>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4. 수임자가 다수인 경우, 별지로 작성</li> </ol>				



【별지 제5호서식】

( ) 주민투표의 청구

청 구 인 서 명 부

서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서명주민수 :                               명

읍·면(○책 중 ○권)

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

수 입 자                                       (서명 또는 날인)

※ 작성요령

1. ( )에는 주민투표청구의 주요내용을 요약한 주민투표청구대상을 기재하며, 서명주민수가 많은 경우에는 책과 권으로 분철하고, 수입자는 책과 권별로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를 기재한다.
2. 서명을 요청한 수입자가 다수인 경우, 각 수입자를 모두 기재한다.
3. ○○시·군·구 및 읍·면·동(○책중 ○권) 란에는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통·리·반으로 작성한다.

## 청 구 인 서 명 부

번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서 명 또는 날 인	서명 일자	비고

※ 작성요령

1. 번호란에는 서명순서에 의하여 일련번호를 기재.
2.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등록표상의 성명을 기재
3.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
4. 서명 또는 날인란에는 본인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기재하거나 날인
5. 서명자가 서명을 철회하거나,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된 경우에는 붉은선으로 두줄을 그어 삭제하고, 비고란에 그 삭제일자를 기재

【별지 제6호서식】

<b>주민투표청구서</b>			
청구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청구의 대상 및 취지			
청구 이유			
<p>「주민투표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주민투표를 청구합니다.</p> <p style="margin-left: 15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00px;">청구인대표자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150px;">거창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 관련자료</p> <p>※ 작성요령</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li> <li style="color: red;">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li> <li>3. 청구대상 및 취지, 청구이유의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요지만 기재하고 별지로 작성</li> </ol>			

【별지 제7호서식】

이 의 신 청 서			
신 청 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	
대 상			
신 청 취 지			
신 청 사 유			
<p>「주민투표법」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이의를 신청합니다.</p> <p style="margin-left: 200px;">년      월      일</p> <p style="margin-left: 150px;">신 청 인                      (서명 또는 날인)</p> <p style="margin-left: 300px;">거창군수 귀하</p>			
<p>※ 첨부서류 : 증빙자료</p> <p>※ 작성요령</p> <p>1. 성명란에는 청구인의 성명을 한글로 기재, 다만 투표권이 있는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 표상의 성명을 기재</p> <p>2. 주소란에는 외국인의 경우 체류지를 기재</p> <p>3. 대상란에는 주민투표청구취지의 주요내용을 요약하여 기재</p>			

## 관계법령

### ■ 주민투표법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② 주민투표권자의 연령은 투표일 현재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제6조(투표인명부의 작성 및 확정)** ①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투표일 전 22일을 말한다)부터 5일 이내에 투표인명부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의 작성·확정 등에 관하여는 「공직선거법」 제5장(선상투표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

③ 삭제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없다.

1. 법령에 위반되거나 재판중인 사항
2.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또는 사무에 속하는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의 처리에 관한 사항

가. 예산 편성·의결 및 집행

나. 회계·계약 및 재산관리

3의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분담금 등 각종 공과금의 부과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

4.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과 공무원의 인사·정원 등 신분과 보수에 관한 사항

5. 다른 법률에 의하여 주민대표가 직접 의사결정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공공시설의 설치에 관한 사항. 다만,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6. 동일한 사항(그 사항과 취지가 동일한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주민투표가 실시된 후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항

**제8조(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치는 경우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역을 변경하거나 주요시설을 설치하는 등 국가정책의 수립에 관하여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주민투표의 실시구역을 정하여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미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표하여야 하며, 공표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에 관하여는 제7조, 제16조, 제24조제1항·제5항·제6항, 제25조 및 제2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주민이 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제5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주민의 의견을 듣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18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주민투표권이 없는 사람은 제외한다.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은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20분의 1 이상 5분의 1 이

하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1. 삭제
2. 삭제

③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주민등록표 및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산정한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1월 10일까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여야 한다.

⑤ 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지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0조(청구인대표자의 선정과 서명의 요청 등)** ①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제9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주민투표청구인대표자(이하 “청구인대표자”라 한다)를 선정하여야 하며, 선정된 청구인대표자는 인적사항과 주민투표청구의 취지 및 이유 등을 기재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요청을 위하여 같은 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의 이용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신청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가 주민투표청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한 후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고 그 사실을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후단에 따라 정보시스템의 이용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항 각 호의 사항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③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4항에 따라 전자서명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주민에게 알릴 수 있다.

1. 전자서명을 위한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전자서명을 하는 방법 및 제7항에 따른 전자서명의 철회방법

⑥ 청구인서명부에 서명을 한 자가 그 서명을 철회하고자 하는 때에는 그 청구인서명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되기 전에 이를 철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청구인대표자는 즉시 청구인서명부에서 그 서명을 삭제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4항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에 전자서명을 한 사람이 그 전자서명을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제12조제1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 활용을 요청하기 전에 제4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직접 철회하여야 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 서명(제4항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제11조, 제12조, 제12조의2, 제29조 및 제30조에서 같다) 요청,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작성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청구인서명부의 심사·확인 등)** ①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3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이 만료되는 날부터 시·도의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5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청구인대표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전자청구인서명부를 직접 활용하도록 요청하는 것을 말한다)하여야 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명은 이를 무효로 한다.

1. 주민투표청구권자가 아닌 자의 서명
2. 누구의 서명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서명
3. 서명요청권이 없는 자의 요청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4. 동일인이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2 이상의 유효한 서명을 한 경우에는 그 중 하나의 서명을 제외한 나머지 서명
5.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서명요청기간외의 기간에 행하여졌거나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요청이 제한되는 기간에 행하여진 서명
6. 강요·속임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행하여진 서명
7. 이 법의 위임에 의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식과 절차에 위배되는 서명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출된



때에는 지체없이 주민투표청구사실을 공표하고,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또는 그 사본을 7일간 공개된 장소에 비치하여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내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있을 때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람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지체없이 이의신청인과 청구인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⑦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된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이 무효인 서명으로 판정되어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하게 된 때에는 청구인대표자로 하여금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이를 보정하게 할 수 있다.

⑧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청구인대표자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1. 유효한 서명의 총수(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정을 요구한 때에는 그 보정된 서명을 포함한다)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요건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청구서와 청구인서명부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을 경과하여 제출된 경우
3. 제7항의 규정에 의한 보정기간 이내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청구인서명부의 제출 방법 및 서명에 대한 심사·확인 등 주민에 의한 주민투표청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도의 부시장·부지사, 시·군·구의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3조(주민투표의 발의)**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요지를 공표하고 관할선거관리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1. 제8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를 발의하겠다고 통지한 경우
  2. 제9조제2항 또는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주민투표청구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
-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공표한 날부터 7일 이내(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의 발의가 금지되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에 투표일과 주민투표안을 공고함으로써 주민투표를 발의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가 주민투표청구의 목적을 수용하는 결정을 한 때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하지 아니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동안에는 주민투표를 발의할 수 없다.

**제14조(주민투표의 투표일)** ①주민투표의 투표일은 제13조제2항에 따른 주민투표발의일로부터 23일(제3항에 따라 투표일을 정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후 첫 번째 수요일로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투표일이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민속절 또는 공휴일인 때와 투표일 전일이나 그 다음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주의 수요일로 한다.
- ③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공직선거법」의 규정에 의한 선거가 실시되는 때에는 그 선거의 선거일전 60일부터 선거일까지의 기간은 투표일로 정할 수 없다.
- ④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협의하여 동시에 주민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시·도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군·구는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청구인대표자는 제10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인대표자증명서의 교부를 신청할 때 제1항 단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주민투표실시구역으로 정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대표자증명서를 교부하기 전에 지방의회의 동의를 받아 주민투표실시구역을 정하여야 한다.

**제18조의2(전자적 방법에 의한 투표·개표)** ①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사용하는 방법에 따른 투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투표”라 한다) 및 개표(이하 이 조에서 “전자개표”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1. 청구인대표자가 요구하는 경우
2. 지방의회가 요구하는 경우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실시 여부 및 그 절차와 방법 등의 결정에 관하여 심의회의 심의 및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의 협의를 거쳐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투표를 발의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1. 전자투표를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
2. 휴대전화 등을 통한 본인인증에 따른 본인 여부 확인 등 전자투표의 방법
3. 그 밖에 전자투표에 필요한 기술적인 사항

④ 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자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제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직선거법」 제147조에 따른 투표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⑤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쳐서는 아니 된다.

1. 해킹, 컴퓨터바이러스, 논리폭탄, 메일폭탄, 서비스거부 또는 고출력 전자기파 등의 방법
2.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의 정상적인 보호·인증 절차를 우회하여 정보통신망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나 기술적 장치 등을 정보통신망 또는 이와 관련된 정보시스템에 설치하는 방법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전자투표·전자개표의 절차·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투표운동기간 및 투표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 투표운동기간은 주민투표일 전 21일부터 주민투표일 전날까지로 한다.

②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투표운동을 할 수 없다.

1. 주민투표권이 없는 자
2. 공무원(그 지방의회의 의원을 제외한다)
3. 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
4. 방송법에 의한 방송사업(방송채널사용사업은 보도에 관한 전문편성을 행하는 방송채널사용사업에 한한다)을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제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5.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하여야 하는 신문, 인터넷신문 또는 인터넷뉴스서비스와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5조 또는 제16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하여야 하는 정기간행물(분기별 1회 이하 발행되거나 학보 그 밖에 전문분야에 관한 순수한 학술 및 정보지 등 정치에 관한 보도·논평 그 밖에 여론형성의 목적없이 발행되는 신문, 인터넷신문, 인터넷뉴스서비스 또는 정기간행물은 제외한다)을 발행 또는 경영하거나 이에 상시 고용되어 편집·취재·집필 또는 보도의 업무에 종사하는 자
6. 통·리·반의 장

**제24조(주민투표결과의 확정)** ①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투표와 유효투표수 과반수의 득표로 확정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것

으로 본다.

1. 전체 투표수가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4분의 1에 미달되는 경우
2. 주민투표에 부쳐진 사항에 관한 유효득표수가 동수인 경우

② 삭제

③관할선거관리위원회는 개표가 끝나면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공표한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투표결과를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제8조의 규정에 의한 국가정책에 관한 주민투표인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주민투표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⑤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내용대로 행정·재정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⑥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는 주민투표결과 확정된 사항에 대하여 2년 이내에는 이를 변경하거나 새로운 결정을 할 수 없다. 다만,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찬성과 반대 양자를 모두 수용하지 아니하거나 양자택일의 대상이 되는 사항 모두를 선택하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5조(주민투표소송 등)** ①주민투표의 효력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주민투표권자는 주민투표권자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의 서명으로 제24조제3항에 따라 주민투표결과가 공표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을 피소청인으로 하여 시·군·구의 경우에는 시·도선거관리위원회에, 시·도의 경우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소청할 수 있다.

②소청인은 제1항에 따른 소청에 대한 결정에 불복하려는 경우 관할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을 피고로 하여 그 결정서를 받은 날(결정서를 받지 못한 때에는 결정기간이 종료된 날을 말한다)부터 10일 이내에 시·도의 경우에는 대법원에, 시·군·구의 경우에는 관할 고등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③주민투표에 관한 소청 및 소송의 절차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직선거법」 제219조부터 제229조까지의 규정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의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투표의 전부 또는 일부무효의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그 날부터 20일 이내에 무효로 된 투표구의 재투표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표일은 늦어도 투표일전 7일까지 공고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는 그 관결에 특별한 명시가 없는 한 제6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초 투표에 사용된 투표인명부를 사용한다.
-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천재·지변 및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투표를 실시할 수 없거나 실시하지 못한 때에는 관할선거관리위원회와 협의하여 투표를 연기하거나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여야 한다.
-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한 경우에는 처음부터 투표절차를 다시 진행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이미 진행된 투표절차에 이어 계속하여야 한다.
- ⑦ 제1항에 따른 재투표, 제3항에 따른 투표 연기 및 투표일 재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2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투표인(투표인명부 작성전에는 그 투표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게 금전·물품·향응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公私)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거나 이러한 행위에 관하여 지시·권유·요구 또는 알선한 자
2. 투표인에 대하여 폭행·협박 또는 불법으로 체포·감금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투표의 자유를 방해한 자
3. 법령에 의하지 아니하고 투표함을 열거나 투표함(빈 투표함을 포함한다) 또는 투표함안의 투표지를 제거·파괴·훼손·은닉 또는 탈취한 자
4. 주민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
5. 직업·종교·교육 그 밖의 특수관계 또는 지위를 이용하여 주민투표에 부당한 영향을 미친 자
6. 제18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전자투표를 하거나 전자투표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자

## 2025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열람 공고

「환경영향평가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 규정에 따른 『2025 거창군 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에 관한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아래와 같이 열람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2년 11월 09일

거창군수

### 1. 계획의 개요

- 계획명 : 2025 거창군관리계획(재정비) 결정(변경)
- 계획범위 : 경상남도 거창군 804.1km<sup>2</sup>
- 목표연도 : 2025년
- 수립기관 : 거창군

### 2. 주민 열람 기간 및 장소

- 공람기간 : 2022. 11. 09. ~ 2022. 12. 20. (30일간/주말·공휴일제외)
- 공람장소 : 거창군 도시건축과
- \* 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eiass.go.kr](http://www.eiass.go.kr)) 게재

### 3. 주민의견 제출기간 및 방법

- 제출기간 :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7일 이내 (2022. 12. 27까지)
- 제출방법 : 주민의견서 양식에 의거 거창군 도시건축과로 서면 제출

### 4. 관계도서

- 관련 도서를 열람장소에 비치하고 있으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기간 내 의견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5. 기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거창군 도시건축과(☎055-940-358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거창군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공포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2년 11월 7일

### 거 창 군 수

1. **자치법규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2. **개정이유** : 민선8기 공약사항 실천과 조직의 안정적인 연속성을 유지 하면서 성과를 창출할 수 있는 효율적인 행정조직 운영과 미래 성장 50년을 위한 관광, 신산업 발굴 등 미래성장산업 추진동력확보를 위해 행정기구를 개편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1국(局)을 신설하고 그 분장 사무를 정함
  - 나. 민선8기 핵심공약 추진과 미래 성장산업 추진을 위한 1담당관 신설 및 과(課) 폐지

국(局)	과(課)	비 고
행정국(4)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경제복지국(4)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	
안전건설국(5)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	

라. 기구 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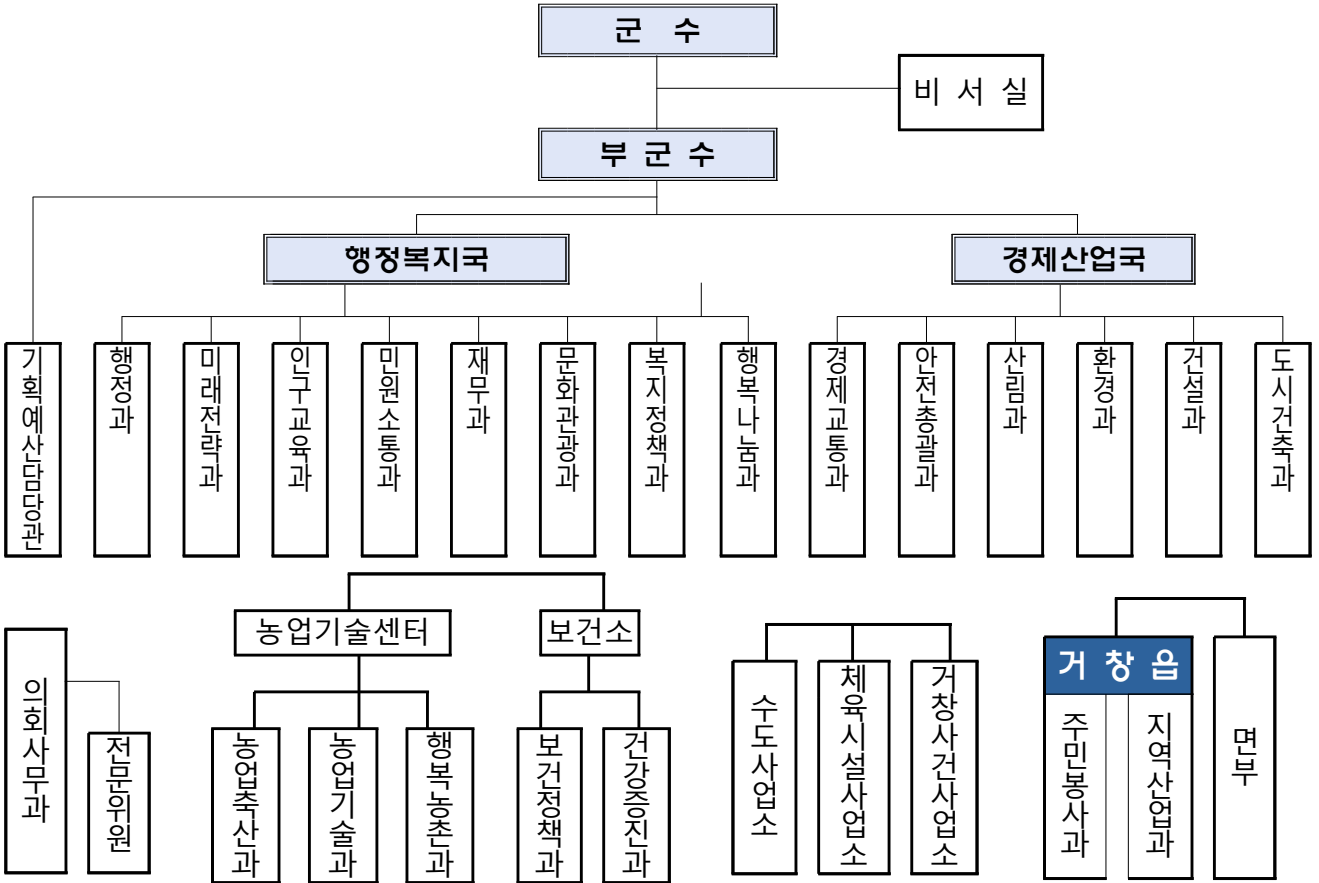
1) 현 행 : 2국 1담당관 14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2) 조 정 : **3국 2담당관 13과** 1의회 2직속기관 3사업소 12읍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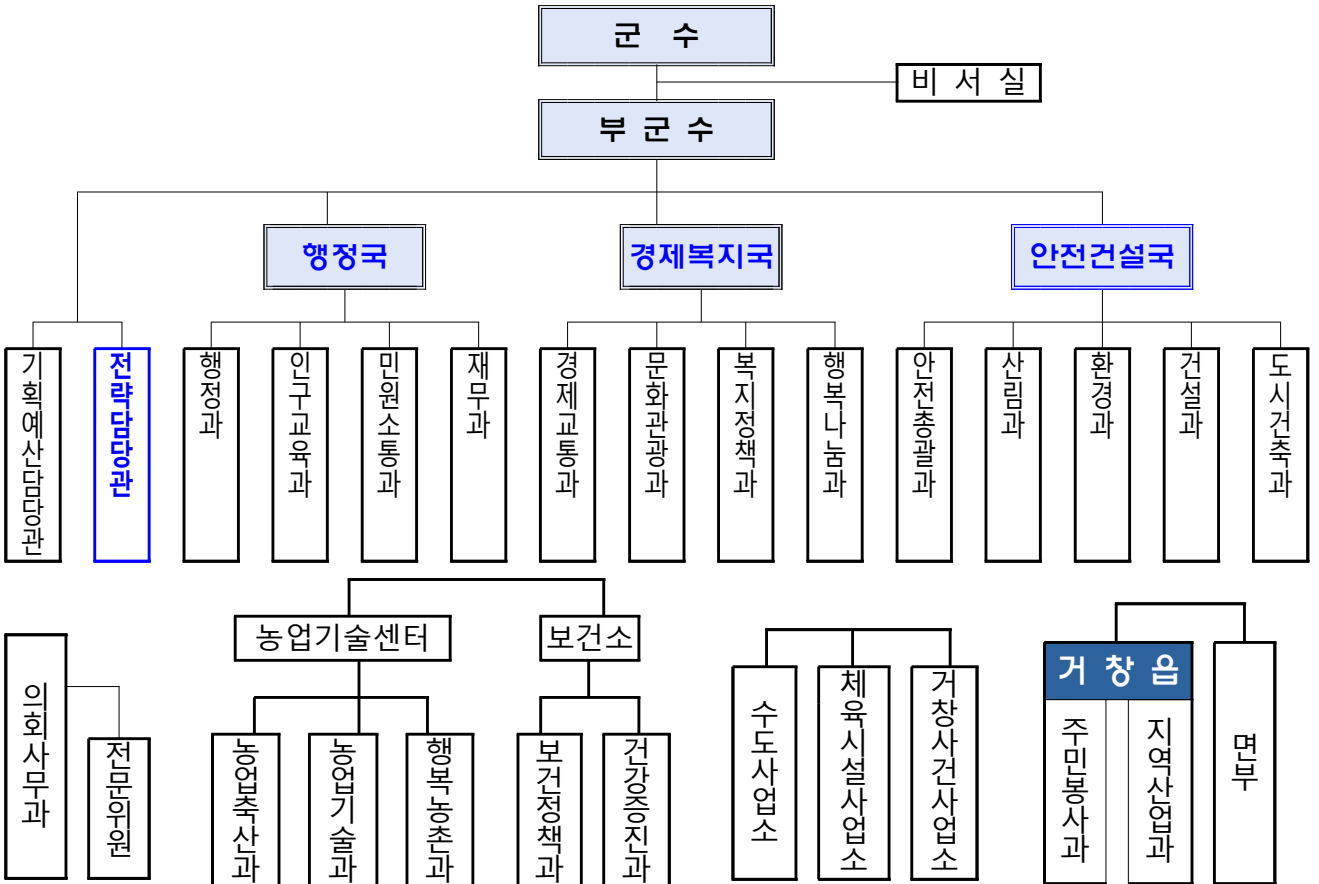
마. 정원의 총수 조정 : 변동 없음



□ 현 행



□ 조 정



#### 4. 의견제출

가.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2년 11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거창군(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제출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 2) 제출자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 3) 그 밖에 참고사항 등

다. 주소 : (우50132) 거창군 거창읍 중앙로 103 거창군청(행정과)

라. 전화 055-940-3172, 팩스 055-940-3179, 이메일 eros338@korea.kr

붙임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

## 입법예고 의견 제출서

□ 조 례 명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생 년 월 일 :

○ 전 화 번 호 :

조례안 내용	의 견	비 고

##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거창군 행정기구와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기획예산담당관”을 “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으로 한다.

제4조 중 “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을 “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으로 한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에 관한 사항
3. 일반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에 관한 사항
4. 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에 관한 사항

**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

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에너지 정책,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
2.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
3.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

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

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
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
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
4.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
5. 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

제9조4호 중 “방역”을 “방역, 동물복지”로 하고, 같은 조 제16호 중 “학교급식”을 “외식산업, 학교급식”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u>기획예산담당관</u>을 둔다.</p> <p>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복지국, 경제산업국</u>을 둔다.</p> <p>제5조(행정복지국) ① 행정복지국에 <u>행정과, 미래전략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u>를 둔다. ② 행정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u>에 관한 사항 2. <u>군 현안·역점 사항 추진, 기업지원, 승강기산업 육성, 투자유치 등 미래 전략</u>에 관한 사항 3. <u>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u>에 관한 사항 4. <u>민원행정,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u>에 관한 사항 5. <u>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u>에 관한 사항 6. <u>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승대 등 문화관광</u>에 관한 사항 7. <u>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u>에 관한 사항 8. <u>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u>에 관한 사항</p>	<p>제3조(담당관 설치) 거창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부군수 소속으로 <u>기획예산담당관, 전략담당관</u>을 둔다.</p> <p>제4조(국 설치) 군의 행정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u>행정국, 경제복지국, 안전건설국</u>을 둔다.</p> <p>제5조(행정국) ① 행정국에 <u>행정과, 인구교육과, 민원소통과, 재무과</u>를 둔다. ② 행정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1. <u>조직·인사 운영, 직원 복무·후생복지, 대외협력, 정보전산 등 행정</u>에 관한 사항 2. <u>인구정책, 청년정책, 교육진흥, 청소년 보호육성, 도서관 관리·운영 등 인구·교육</u>에 관한 사항 3. <u>일반민원행정, 자동차등록, 지적민원, 새주소사업, 식품·공중위생, 지적재조사 등 민원</u>에 관한 사항 4. <u>지방세 부과, 경리·계약, 세입관리, 공유재산관리, 개별 주택·공시지가 등 재무</u>에 관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6조(경제산업국) ① 경제산업국에 경제교통과,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p> <p>② 경제산업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경제, 지역공동체, 일자리 창출, 에너지정책, 교통행정·운수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li> <li>2.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재해복구, 안전점검, 민방위, 통신·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li> <li>3. 산림사업,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항노화,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li> <li>4.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 관한 사항</li> <li>5. 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li> <li>6. 도시계획, 도시개발, 도시재생,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li> </ol>	<p>제6조(경제복지국) ① 경제복지국에 경제교통과, 문화관광과, 복지정책과, 행복나눔과를 둔다.</p> <p>② 경제복지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시장·경제, 기업승강기 산업 지원, 투자유치, 에너지 정책, 교통정책·교통지도, 운수 등 경제교통에 관한 사항</li> <li>2. 문화예술·축제, 관광정책, 문화재보존, 박물관·수송대 등 문화관광에 관한 사항</li> <li>3. 복지정책 종합계획 수립,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희망복지지원단 운영, 복지대상자 통합조사, 기초생활보장 등 복지정책에 관한 사항</li> <li>4. 노인복지, 장애인복지, 여성·아동·보육 등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li> </ol>
<p>&lt;신 설&gt;</p>	<p>제6조의2(안전건설국) ① 안전건설국에 안전총괄과, 산림과, 환경과, 건설과, 도시건축과를 둔다.</p> <p>② 안전건설국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재난안전관리정책, 재난대응총괄, 자연재난, 안전점검, 중대재해예방, 민방위, 통신·CCTV 관제 등 안전에 관한 사항</li> <li>2. 산림조성, 산림소득, 화강석 육성, 산림보호, 공원·녹지 조성관리, 산림레포츠, 힐링랜드 운영 등 산림에 관한 사항</li> <li>3. 환경정책, 환경보존, 폐기물 관리, 수질·토양 개선, 자연환경보전, 야생동물 보호, 창포원 운영 등 환경에</li> </ol>

현행	개정안
<p>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li> <li>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li> <li>4. 가축질병, <u>방역</u> 등에 관한 사항</li> <li>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li> <li>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li> <li>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li> <li>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li> <li>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li> <li>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li> <li>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li> <li>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li> <li>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li> <li>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li> <li>16. <u>학교급식</u>,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li> <li>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li> </ol>	<p><u>관한 사항</u></p> <p>4. <u>건설행정, 농업기반조성, 하천, 도로 등 건설에 관한 사항</u></p> <p>5. <u>도시계획, 도시개발, 스마트도시, 건축 사업·행정, 건축 허가·신고 등 도시건축에 관한 사항</u></p> <p>제9조(소관사무)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농업정책, 농지 보존·이용에 관한 사항</li> <li>2. 농촌지도사업, 농업인 지원에 관한 사항</li> <li>3. 축산행정, 축산기술 지도·보급 등에 관한 사항</li> <li>4. 가축질병, <u>방역, 동물복지</u> 등에 관한 사항</li> <li>5. 농업 기계화 지원, 농기계 임대사업 등에 관한 사항</li> <li>6. 식량작물, 농작물 재해 등에 관한 사항</li> <li>7. 원예, 특용작물 등의 생산·재배·기술지도에 관한 사항</li> <li>8. 과수재배 신기술 보급, 과수 시범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li> <li>9. 친환경 농업 육성에 관한 사항</li> <li>10. 기술 벤처농업, 특화작물에 관한 기술개발·지도에 관한 사항</li> <li>11. 농촌진흥, 마을만들기에 관한 사항</li> <li>12.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등에 관한 사항</li> <li>13. 농산물 수출과 해외시장 개척에 관한 사항</li> <li>14. 농촌융복합산업에 관한 사항</li> <li>15. 귀농, 귀촌에 관한 사항</li> <li>16. <u>외식산업, 학교급식</u>, 로컬푸드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li> <li>17. 그 밖에 농업·농촌 발전, 시험연구, 농촌진흥에 관한 사항</li> </ol>



[별표 4]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제27조 관련)

기관별 직급별	총계	본청	의회	직속기관			사업소	읍	면	
				소계	농업 기술센터	보건소				
총 계	793	360 358	17	149	76 75	73 74	41	42 43	184 185	
정무직	1	1								
일반직	소계	756 352	354 352	17	119	46 45	73 74	40	42 43	184 185
	4급	5 4	4 3		1		1			
	4~5 급	0 1						0 1		
	5급	39 38	15	3	6	4	2	3	1 0	11
	6급 이하	712 713	335 334	14	112	42 41	70 71	37	41 42	173 174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1	1								
연구직 (연구사)	7	3		3	3		1			
지도직 (지도사)	28	1		27	27					

# 관 계 법 령

## □ 지방자치법

**제125조(행정기구와 공무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분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행정기구의 설치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은 인건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지방공무원의 정원이 적절하게 운영되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균형이 유지되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④ 지방공무원의 임용과 시험·자격·보수·복무·신분보장·징계·교육·훈련 등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공무원을 둘 수 있다.

⑥ 제5항에 규정된 국가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5급 이상의 국가공무원이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을 거쳐 대통령이 임명하고, 6급 이하의 국가공무원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제청으로 소속 장관이 임명한다.

## □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13조(시·군·구의 기구설치기준)** ① 시·군·구 본청의 실·국이나 과·담당관과 자치구가 아닌 구의 과·담당관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되, 시·군·구 본청에 두는 실·국의 설치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8. 2. 20.>

② 시·군·구 본청의 실장·국장과 과장·담당관의 직급과 실·과·담당관의 사무분장 등에 관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한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는 관할 시·군·구 조직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구의 설치·운영에 관한 지침을 작성하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통보할 수 있다. <개정 2012. 6. 29., 2020. 3. 10.>

④ 시장·군수·구청장은 실·국과 실·과·담당관의 명칭과 사무분장을 시·도와 시·군·구간 사무의 연계성과 그 기능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제38조(기구와 정원에 관한 조례·규칙의 입법예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나 정원의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규칙의 제정·개정안을 마련한 경우에는 입법예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거나 기구·정원의 감축 또는 하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추가적인 경비가 소요되지 아니하지만 상위직으로의 직급 조정을 내용으로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입법예고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기구와 정원의 조정으로 추가로 경비가 드는 조례안을 제1항에 따라 입법예고하는 경우 그 추가로 드는 경비를 나타내야 한다.

[별표 3]

1. 실·국의 설치기준(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실·국의 수	
시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15만 미만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른 도농 복합형태의 시)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구를 설치하지 않은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7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70만 이상 9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4개 이상 6개 이하	
	인구 90만 이상 10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5개 이상 7개 이하	
	인구 100만 이상 120만 미만(구를 설치한 시)	6개 이상 8개 이하	
	인구 120만 이상(구를 설치한 시)	7개 이상 9개 이하	
군	<b>인구 15만 미만</b>	<b>1개 이상 3개 이하</b>	
	인구 15만 이상 2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20만 이상	3개 이상 5개 이하	
구	특별시의 자치구		4개 이상 6개 이하
	광역시의 자치구	인구 10만 미만	1개 이상 3개 이하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	2개 이상 4개 이하
		인구 30만 이상 50만 미만	3개 이상 5개 이하
		인구 50만 이상	4개 이상 6개 이하

비고

1. 시·군·구별 실·국의 수는 위 표의 실·국의 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한다. 이 경우 사무의 성질과 양, 기구 운영의 효율성과 능률성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산정·통보하는 행정수요의 변화율을 고려해야 한다.
2. 효율적 조직 운영을 위하여 위 표의 최소 기준보다 적은 수로 실·국을 설치할 수 있다.
3. 실·국의 수를 산정함에 있어 그에 해당하는 직급의 정원으로 실·국의 명칭이 아닌 기구나 정원을 운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표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4. 법 제10조제2항제2호와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군이 도농 복합형태의 시로 된 경우에는 해당 시에 대하여 시로 된 날부터 2년간은 위 표의 시(법 제10조제2항제1호의 도농 복합형태의 시는 제외한다)의 기구설치기준에서 1개의 실·국(인구 15만 미만인 시는 제외한다)을 감하여 적용한다.
5. 법 제10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도농 복합형태의 시가 별표 6 제2호의 비고 제2호에 따라 출장소의 장의 직급을 4급으로 책정하는 경우(해당 출장소의 관할 인구가 7만 이상인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위 표의 실·국의 수에 포함하여 산정한다.
6.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팀제를 시범운영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구설치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7.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군·구의 경우에는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부시장·부군수·부구청장 직속으로 위 표의 설치기준 범위에서 자체감사업무를 전담하여 수행하는 기구를 두어야 한다.
8. 위 기구설치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시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거쳐 2년의 범위에서 해당 시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 동안 1개의 실·국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해당 실·국의 존속기간 만료 전에 운영 성과를 평가한 후 그 존속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해야 하며, 그 협의 결과에 따라 실·국의 폐지 또는 존속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 2. 실장·국장·담당관·과장 등의 직급기준(제14조 관련)

구 분	실장(국장급)·국장·자치구가 아닌 구의 구청장	실장(과장급)·과장·담당관	읍장·면장·동장	부읍장·부면장	인구 3만 이상 읍의 과장
시·군·구	4급	5급			
읍·면·동			5급	6급	6급

## 비고

1. 인구 10만 미만의 시·군이 제1호의 설치기준에 따른 실·국 중 1개 이상의 기구를 감축 운영하는 경우에는 실·국 중 감축된 수 만큼에 해당하는 실장(과장급)·과장이나 읍장을 4급 또는 5급으로 임명할 수 있다.
2. 읍장·동장의 직급기준 중 읍과 동의 인구가 7만 이상이거나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동(자치구가 아닌 구를 설치한 시의 동과 출장소의 장이 4급인 출장소의 관할 동은 제외한다)의 경우에는 읍장·동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장·군수와 협의하여 정하는 면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하는 날부터 3년간은 면장을 4급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
3. 위 표의 직급기준에도 불구하고 인구 7만 이상의 읍의 경우에는 2명의 범위에서 과장을 5급(읍장이 4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고, 복지·안전 등 특정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읍·면·동의 경우에는 과장을 5급(읍·면·동장이 4급인 경우) 또는 6급(읍·면·동장이 5급인 경우) 일반직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다.